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 3.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체육회관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방법 :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또는 신규공모
- 운영예산 :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위탁경비 미지원)

○ 위탁 주요사무

-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
-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1995년~2017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견이 없음.
-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월 등록회원이 약 600여명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항에 근거하여 위탁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운영 예산을 체육회관 시설운영 수익으로 충당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민간위탁 시설과는 다르게 충청북도 체육회관의 운영 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점검, 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